

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'99. 12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'99. 12. 20

다. 상정일자 :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

제3차 본회의 상정

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,3차 회의, 토론

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보고서 채택

제6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래 물부족에 대비 중수도설치가 적극 권장되면서 중수도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
- 요금과 공과금의 현실화 및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급수공사 승인절차등 급수공사 시행에 대하여 정함.
- 급수공사 수수료 및 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별도로 정함.
- 중수도 설치 및 사용중인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정함.
- 시설분담금 기준을 인입관 구경으로 함.
-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함.
- 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매격월로 정함.
-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단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개정조례는 최근 중수도 설치가 적극 권장되면서 중수도 설치 및 사용중인

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용도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
아울러 본 개정조례에서는 요금과 공과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급수공사 승인절차등 미비한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것이 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